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혀 개 정 안

제8조(청문) ①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 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과태료 부과 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 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 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 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 는 영 제39조의 청문절차규정에 따른 다.

제8조(의견진술)①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 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〈삭 제〉

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 〈 삭제〉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 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삭제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8. 12. 24. 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11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
나. 회 부 일 자 : 1998년 11월 23일 회부

다. 상 정 일 자 : 제61회 정기회 제14차 사회건설위원회('98. 12. 22) 상정 의결

2. 제 안설 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남승운)

가. 개정이유

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중에 있 는 재해대책기금 운용·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'98. 5. 행정 자치부에서 시달된 동 조례개정준칙(안)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'98. 10. 9. 서울특별 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에 따른 변경사항을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토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 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(안 제3조)
-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 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4조)
-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 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하여 업무혼선 방지(안 제5조)
- 기금의 운용·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 문 신설(안 제7조 내지 제9조)

○ 구청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금운용계 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유재한)

현재 운용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레의 내용이 자연재해대책법과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동조례를 개정하여 운용관리 및 내용을 동일케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이고, 또한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준칙에 따라 재해발생시 긴급을 요할 때 지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된 것이며 기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의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 30

제출년월일 : 1998. 11. 20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-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용·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'98. 5.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동 조례개정준칙(안)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'98. 10.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에 따른 변경사항을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①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토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 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(안 제3조)
- ②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4조)
- ③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·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하여 업무혼선 방지(안 제5조)
- ④기금의 운용·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용토록 조 문신설(안 제7조 내지 제9조)
- ⑤구청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
- 개정조례 표준(안) 통보 : 서울시 치수 13930-844('98. 5. 29)
- 나. 예산조치 : 없 음.
- 다. 합의사항 : 없 음.

붙임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(안). 1부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(이하 "법"이라한다)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(이하 "기금"이라한다)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.

- 1.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
- 2. 기금의 운용수입
- 3. 기타 잡수입 등
- 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 책법시행령(이하"영"이라한다)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 되,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 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.
- 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 - 1.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·정비를 요하는 사업
 - 2.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
 - 3.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
 - 4.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·수문·배수관·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
 - 5. 하수도시설(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)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
 - 6. 수리시설은 배수장, 방조제, 용수로 ·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
 - 7.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(영등포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)의 정비사 업
- 제5조(기금의 회계관리) 기금의 수입·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6조(회계공무원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 정한다.
 - 1. 기금운용관 : 건설교통국장
 - 2. 기금출납원 : 치수과장
 -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.

- 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.
 -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영등포구소속 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 -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치수과 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- 제8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기금의 운용계획
 - 2.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
 - 3. 기금의 결산
 - 4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정기회의는 다음 년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
 -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0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기금의 조성계획
 - 2. 기금의 사용계획
 - 3. 기금의 운용방법
 - 4.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
 -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격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젔 아

- 제3조(기금의 운용관리)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 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 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4조(기금의 용도)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 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- 제5조(기금의 회계관리) 이 기금의 수입·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.
- 제6조(회계공무원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,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.
 - 1. 기금운용관 : 건설국장
 - 2. 기금출납원 : 하수계장
 -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.

- 제3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 법시행령(이하"영"이라한다)제59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 여야 한다.
 -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영등포구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 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해당 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 - 1.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 를 요하는 사업
 - 2.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
 - 3.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
 - 4.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·수문·배수관 ·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
 - 5. 하수도시설(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)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
 - 6. 수리시설중 배수장, 방조제, 용수로 · 배수 로 및 보의 정비사업
 - 7. 재해위험비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(영등 포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)의 정비사
- 제5조(기금의 회계관리) 기금의 수입·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6조(회계공무원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 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 정한다.
 - 1. 기금운용관 : 건설교통국장
 - 2. 기금출납원 : 치수과장
 -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 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 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 야 한다.

했 혀

제7조(결산 및 보고) ①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 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

②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개 óŀ 젔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기금의 운용·관리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의하여 구청장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한다) 를 둔다.

-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 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.
-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영등포구소 속 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 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을 두되 치수과 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- 제8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기금의 운용계획
 - 2.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
 - 3. 기금의 결산
 - 4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
 -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0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구청장 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기금의 조성계획
 - 2. 기금의 사용계획
 - 3. 기금의 운용방법
 - 4.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
 -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 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.